미국 기후변화 소송의 헌법적 쟁점: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Juliana v. United States 사건

엄예은

(아메리칸 대학교 SJD과정)

(미국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1])

1. 서론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많아지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24개국에서 제기된 기후변화 소송 중 654건이 미국에서 제기된 것이었고 그 외 국가들의 소송은 약 230건에 달했다.[2] 미국의 기후변화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보통법, 성문법, 공공신탁법, 행정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사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법적 근거를 동시에 제시하기도 한다.

1) 사진: Win McNamee/Getty Images (https://www.axios.com/supreme-court-allows-youth-climate-trial-to-proceed-f56523d0-6124-47e2-b759-7a1448a59d69.html)

2) UNEP, The Statu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 A Global Review (2017).

이 중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Juliana v. United States 사건이다. Juliana v. United States는 21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의 정책이 청소년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3] 2015년 8월 12일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에 처음 소송이 청구된 이후부터 정부와 석탄발전업계의 끊임없는 저항을 불러오고 있는 이 사건은 2016년 11월 10일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Ann Aiken 판사가 청구인 적격, 정치적 문제, 적법절차조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 소송 각하 요청(motion to dismiss)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4]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고 미국 정부와 석탄발전업계는 곧바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6월 9일 제9연방항소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5]을 제기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점적인 권한인 에너지 및 환경 정책에 부적절한 관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첫 번째 직무집행영장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송중지 신청과 직무집행영장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2018년 11월 21일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Ann Aiken 판사는 소송을 일단 중지시키고 피고의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신청을 승인했다.[6][7] 2018년 12월 26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소송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재 이에 대한 재판 절차와 변론이 진행 중이다.[8]

본보고서는 기후변화 소송과 관련하여 역사적인 판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소송 각하 요청 기각 판결을 중심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소송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2016).
4) 피고는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2(b)(6)항에 따라 원고가 기재한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을 이유로 소의 각하(motion to dismiss)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거나 재심의하도록 명하는 직무집행영장(writ of mandamus)을 발부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6) 해당 사건에 대한 다른 지방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소송의 잠정 중지(stay of proceedings)를 요구할 수 있다.
7)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은 재판절차 진행 중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주요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라고 부른다.
8) Our Children's Trust, 2019년 12월8일, https://www.ourchildrenstrust.org/federal-proceedings

2. 청구인 적격 (standing)

청구인 적격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야 하는 질문으로 미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리이다.[9] 원고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성립해야 하는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1)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침해(injury in fact)가 발생하였고 (2) 이익침해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며 (3) 법원의 판결이 그 이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10]

환경 관련 사건에서 이익침해란 환경에 가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 개인에게 가해진 것이어야 한다. 즉, 환경보호단체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환경보호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침해이다. 한 예로, 2000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인 Friends of the Earth v. Laidlaw에서 환경보호단체인 Friends of the Earth는 Clean Water Act를 위반한 Laidlaw를 상대로 시민소송을 제기했는데 Friends of the Earth의 구성원들은 청구인 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들이 이 사건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했다. Friends of the Earth의 구성원인 Kenneth Lee Curtis는 자신이 Laidlaw의 시설에서 0.5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환경오염이 일어난 장소인 North Tyger River에서 어렸을 때부터 낚시, 캠핑, 피크닉 등의 여가활동을 해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진술서들을 토대로 Friends of the Earth가 이익침해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판결했다.[11]

Juliana v. United States는 21명의 청소년들을 원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먼저 증명돼야 했다. 21명의 청소년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양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서술 되어있는데 대표원고인

9) 미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연방사법부의 권한은 case와 controversy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정한 사건이 case 또는 controversy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판례를 통해 정립하였다.
10) 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S.Ct. 2130 (1992).
11) Friends of the Earth, Inc. v. Laidlaw Envt'l Servs. (TOC), Inc., 120 S.Ct. 693 (2000).

Kelsey Juliana는 녹조현상 때문에 자신이 먹는 물이 오염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원고인 Xiuhtezcatl Roske-Martinez는 잦아지는 산불과 홍수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진술하였다.[12]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서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원고의 이익 침해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재적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 적격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두 번째는 피고의 행동과 이익침해 간의 연관성이다. 원고의 이익 침해가 다른 제3자의 행동이 아닌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의 행동이 이익 침해의 유일한 원인인 필요는 없지만 그 연결고리가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된다.[13] 이 부분에 관해서 Juliana v. United States와 Bellon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기후변화에 관련한 소송이었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다.

환경단체들이 워싱턴 주 환경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Bellon소송은 지역 내 정유공장 다섯 곳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것을 촉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이익 침해가 정부기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고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의 이유를 정유공장 다섯 곳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참고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다섯 곳의 정유공장의 온실가스 배출은 워싱턴 주 전체 배출량 중 6%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정유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증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14]

이에 반해 Juliana v. United States의 재판부는 이번사건의 사실관계는 Bellon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요한다고 말했다. Juliana 사건의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피고의 행동이 기후변화에 끼친

12)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42 (2016).
13) Barnum Timber Co. v. EPA, 633 F.3d 894, 901 (2011).
14) Wash. Evnt'l Council v. Bellon, 732 F.3d 1131 (2013).

영향의 크기이다. Bellon사건에서 정유공장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여러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원고에 따르면 미국은 1751년과 2014년 사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25% 이상을 배출했으며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상승 중에 있다. 2012년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에 끼친 영향이 Bellon사건에서처럼 미미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행동과 원고의 이익 침해 간의 연관성을 인정했고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인 적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요건이 피고의 행동과 이익 침해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요건인 구제가능성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 침해와 원고가 요구하는 사법적 조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탈석탄 정책을 시행할 것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느리게 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15] 이에 대해 Juliana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통제할 수 있고 이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면 원고가 요청한 법적 구제 방법으로 그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에 기여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게만 적용되는 사법적 조치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제가능성 요건은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법적 구제 방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묻는 것이며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원고에게

15)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525 (2007).

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원고의 청구인 적격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16]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환경문제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이익 침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사실과 그 이익 침해에 대한 유의미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정치적 문제 (political question doctrine)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적 관할은 정치적 문제에는 미치지 않는다.[17]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은 삼권분립의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판례법에 의거하여 정치적 문제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Baker Test라 불리는 여섯 가지 기준을 주어진 사건에 각각 적용해야 한다.[18]

먼저 Baker Test의 첫 번째 기준은 헌법 원문에 해당 이슈를 행정부의 관할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헌법 원문에서 해당 문제를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사법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 Nixon v. United Stations는 탄핵에 대한 권한을 전부 상원에 위임하는 헌법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탄핵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기각했다.[19] 또한 헌법 원문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도 관련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Zivotofsky v. Kerry에서 법원은 외국 정부를 승인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같은 판결은 외국 정부와 교류할 대사를 임명하고 조약을 협상하는 유일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헌법 조항을 유추 적용한 것이었다.[20]

---

16)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47 (2016).
17) Marbury v. Madison, 5 U.S. 137, 170 (1803).
18) Baker v. Carr, 369 U.S. 186, 210 (1962).
Baker Test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이슈에 대한 관할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헌법 규정 (2)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준의 부족 (3)비사법적 재량에 따른 정책 결정 없이 판결을 내리는 것의 불가능성 (4) 다른 정부 부서에 대한 존경의 결여를 표하지 않고 독립적인 해결방안을 채택하는 것의 불가능성 (5) 이미 결정된 정치적 결정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성 (6) 여러 부서가 한 가지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선언을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19) Nixon v. United States, 113 S.Ct. 732 (1993).
20) Zivotofsky v. Kerry, 135 S. Ct. 2076 (2015).

즉, 기후변화정책이 헌법 원문 또는 관련 조항의 유추해석 하에 행정부의 권한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원고는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Juliana 사건의 재판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헌법 조항이 없고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조항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이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인 통상, 외교, 안보, 연방, 연방토지 모두 기후변화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맞지만 해당 사건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과 연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금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법적 제제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부의 외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정책은 외교 정책적 결정의 본질적 또는 주된 특성을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21]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영향으로 인해 국제협약의 대상이 되지만 전쟁 참여, 외국정부에 대한 원조와 같은 성격의 외교 정책적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Baker Test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사법부의 권한 밖에 있는 사안은 심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원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허용 수준을 정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저울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게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배출량 허용 기준치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판단은 경제와 환경의 대립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22]

마지막으로 법원은 다른 정부 부서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네 번째 기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판례에 의하면 Baker Test의 네 번째 기준은 법원 판결이 정부의 외교적 결정과 양립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2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러 국제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

21)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38 (2016).
22)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38 (2016).
23) Whiteman v. Dorotheum GmbH & Co. KG, 431 F.3d 57, 59 (2005).

해왔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다른 정부부서의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은 탄소배출량 저감이었고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보다 더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사회에 한 약속과 이번 사건의 법원이 탄소배출량 저감을 촉구하는 판결을 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24]

4. 수정헌법 제5조 적법절차조항 (due process clause)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있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면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정부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화석연료 발전을 위한 토지를 임대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제3자의 탄소배출 활동을 막지 못한 것이다. 먼저 첫 번째 행위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침해당한 권리가 '중요한 기본권'(fundamental right)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판례법에 의해 중요한 기본권에 관한 사건에는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을 적용하고 그 외 사건에는 대개 합리성심사기준(rational basis)을 적용하는데 이번 사건은 합리성심사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엄격심사기준의

24)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41 (2016).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25] 이에 대해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할 때는 그 판단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어떤 권리들은 다른 권리의 행사를 위해 필요하므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6] 예를 들어 Roe v. Wade의 법원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의 근원을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와 제9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고 Obergefell v. Hodges는 결혼이 다른 기본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결혼할 권리가 중요한 기본권임을 인정했다.[27] 이번 Juliana 사건의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와 같은 논지에 근거해서 "인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에 대한 권리"는 사회질서와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28] 재판부는 결혼이 가족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기후는 사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기후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문명의 존재와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탄소배출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은 제3자의 탄소배출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의 행위가 아닌 정부가 시행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은 정부에게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법원은 이번 사건이 위험조성 예외(danger creation exception)에 속한다고 판단했다.[29] 위험조성 예외란 안전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무관심으로 인해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에 한해 적법절차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판례법이다.[30] Juliana사건을 맡은 오리건 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러한 판례에 따라 피고가 화석연료 발전의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그 사

25) 엄격심사기준에 따라 법원은 기본권을 최대한 정도로 보호해야 하며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제제에 합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 최소침해 수단 및 법익균형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26)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49 (2016).
27) Obergefell v. Hodges, 135 S.Ct. 2584, 2601 (2015). ("결혼은 사회질서의 주축이다")
28) Juliana v. United States, 217 F.Supp.3d 1224, 1250 (2016).
29) DeShaney v. Winnebago Cnty. Dep't of Soc. Servs., 489 U.S. 189 (1989).
30) Penilla v. City of Huntington Park, 115 F.3d 707, 709 (1997).

실을 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중요하게 고려했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위험조성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5. 결론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며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부부서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처음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반복되는 소송 중지 신청과 사전 기각 신청으로 인해 재판 시작일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Juliana v. United States의 앞날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그러나 Juliana v. United States는 원고의 승소 여부를 떠나서 기후변화와 헌법적 쟁점들 간의 연관성을 처음으로 심도 있게 짚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본권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기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후변화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게 했다.

미국의 판례법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범위를 재정립해왔다. 미국 헌법의 권리장전에 열거된 기본권에 더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도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생활보호의 권리, 결혼할 권리, 자녀를 교육할 권리 등이 새로운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되었고 이들 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엄격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허용 가능하게 되었다. 안정적인 기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하기는 이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미국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